

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21. 10. 5 규칙 제1048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공공시설 관리자의 책무) 공공시설 관리자(개별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의 관리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「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에 따른 재산관리관을 말한다)는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·관리해야 한다.

제3조(개방공간) 「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.

제4조(개방시간)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개방시간은 평일 09:00 ~ 18:00로 한다.

제5조(사용신청 등)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개방공간의 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

② 시장은 개방공간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허가서를, 불허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개방공간의 사용허가 시 개방공간 및 개방시간 등 개방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6조(그 밖의 사항)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공공시설 개방공간(제3조 관련)

구 분	공 간 명
본 청	에이스홀
	비전홀
	컨벤션홀
	시청야외음악당
	청소년수련관 앞 광장
처인구청	대회의실
기흥구청	다목적홀
수지구청	대회의실
	광장
읍·면·동	대회의실

[별지 제1호서식]

<앞면>

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

신청자	개인	성명		전화번호	
		주소			
	단체	단체명 (대표)		전화번호	
		주소			
사용시설					
사용일시		년 년	월 월	일(요일) 일(요일)	시부터 시까지
사용목적					
사용인원		총명			
기타 참고사항					

「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및 「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: (인 또는 서명)

용인시장 귀하

* <뒷면>의 【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】를 필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<뒷면>

【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】

□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	용인시 공공시설 사용에 따른 수집·이용
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	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휴대폰 번호, 주소, 이메일, 소속(단체명), FAX
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	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
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	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위 항목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시설 사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※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제공된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 : (인 또는 서명)

용인시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용인시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허가서

신청자	개인	성명 (생년월일)		전화 번호			휴대폰 번호	
		주소 (도로명)				이메일		
	단체	단체명 (대표자)		전화 번호			FAX	
		주소 (도로명)				이메일		
사용시설								
사용일시		년 월 일(요일)	년 월 일(요일)	시부터	시까지			
사용목적								
사용인원		총 명						
준수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책임자 지정 · 배치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주의에 따라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의 민사상 · 형사상 책임 이용료를 받거나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금지 시설물의 오손, 파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 변상 책임 사용 후 집기 및 기자재 등을 정리한 후 사용책임자의 최종 확인 							

「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및 「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을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용인시장 직인

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3호서식]

사용 불가 통지서

신청자	성명 (단체명)					
	주소					
신청내용	사용시설					
	사용기간	년 년	월 월	일 일	(요일) (요일)	시부터 시까지
	사용목적					
불허가사유						

「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」 제9조 및 제10조, 「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용인시장 직인